

법대 학제개편 논의

# 로스쿨, 교육현실 망각한 무책임한 공상론\*

김 성 남

변호사



## 글 머리에

이른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조제도 개혁논의를 공론화한 이래 어떠한 문제의식과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다루는 것인지 종잡기 어려우나, 다른 한편으로 2, 3개월에 걸쳐 우리의 언론이 한꺼번에 쏟아놓은 법조인에 대한 비판과 폭로 보도는 가히 놀랄 만하다 못해 가학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했다. 권력이 언제부터 얼마나 재야 법조인들에 대한 관심이 짚었는지 알 수 없고 우리 언론의 한국적 센세이셔널리즘(선정주의)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작금의

보도는 도저히 납득기 어렵다보니 법조개혁 논란과 언론의 연대는 한국적 '권력현상'의 단면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즉, 정치적 의도를 지닌 권리자나 그 추종자가 정책 드라이브를 위한 국민정서 동원 등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다.

그러나 권력 쪽의 의도와 논란의 메커니즘이 어떻다 하더라도 한국의 민주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법정의의 제 제도와 재야 법조제도의 개혁은 긴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으므로 오늘의 논의는 여전히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당장 1994년 4월 마라카시에서 조인된 WTO체제에 포함된

\* 이 글은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25일 '법조개혁 공동안'을 발표하기 이전 시점에서 짐작되었으므로 공동안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음.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하여, 위 조인후 5년 이내에 시작될 후속 협상에 따라 20세기를 넘기기 전에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한 터이므로 법률가들 역시 외국의 법률회사들과 혹독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고, 이에 경쟁력을 잃을 경우 국가와 기업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법률가들 자신도 자칫 몰락할 다급한 처지에 있을 뿐 아니라 장래에는 국가의 정체성 위기까지 초래할 우려도 있어 아래저래 법조계는 대개혁을 면할 수 없는 급박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 빗나간 논의

그러나 작금의 논의는 몇 가지 점에서 초점으로부터 완전히 빗나간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로 인하여 모처럼의 법조개혁 논의가 개혁은커녕 형식주의로 그럴싸하게 포장된 혀구의 구조물을 출산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실패한 실험으로 끝날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그같은 우려의 몇 가지를 짚어 보자.

첫째, 개혁논의의 출발이 관료권위주의의 법제가 양산해온 억압적 규제의 틀에 대한 근본적 검토는 도외시한 채 실무 변호사들의 직업 윤리에 반하는 일탈에 대한 도덕적 비난에서 비롯되었고, 이른바 재도개혁을 논의하는 공식 석상에서도 설득력 있는 이론적 기초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다.

전관예우니 과다보수니 하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태는 직업윤리의 실종을 의미하고 심지어 우리 사회의 부패한 단면임은 분명하지만, 그같은 부조리의 원인은 조금만 분석적인 사유를 해본다면 원초집단적 연대(primary tie) 또는 公私의 융합이라는 우리 사회의 전근대적 일탈행태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노릇이다. 새삼스럽게 부패론을 운위할 지면의 여유는 없는 노릇이므로 간단히 요약하여 거슬러 올라간

다면 이같은 행태는 권력파의 비민주적 관료주의의 소산일 것이다. 그러나 정의와 형평을 적도로 하는 법조계는 그 일탈에 한계를 지니기 마련이지만, 타 공직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높은 시민의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니 비난은 더욱 거세고 높을 것임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재야 법조계는 직업적 심정윤리에 충실히 하더라도 그 지도적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윤리를 다하려는 촌보의 노력도 한 바가 없다는 비판에도 속수무책인 형편이다.

그러나 개혁을 논할 때 법조인의 역할을 법정에 한정토록 해온 권력편의적 법제, 관료편의의 법집행, 억압적 법제가 빚어내는 반민주적 관행 등이 그같은 문제의 씨앗임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무책임한 '사이비 교양인'으로 더욱 큰 비난을 받을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

둘째, 조금은 낮은 차원의 문제이지만 법조인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검토를 논의하는 노력의 부족이다. 언론이 염이내는 사이비 상황(pseudo-situation)의 대량생산 탓도 있겠지만 법률가들의 역할을 어느 범위까지 구상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논의의 빈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우리의 변호사법은 변호사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국민을 위하여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렇다면 변호사는 법정에나 드나들며 소송대리나 하라는 말밖에는 안 된다. 행정절차는 물론 입법절차에 변호사가 관여하는 일은 상상도 못하는 나라에서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논의하는 지적 천박성은 담대하기까지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하여 노동위원회, 국세심판소, 특히심판소, 방송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조사·심판 등의 준사법적 기능을 보유하는 각종 위원회나 각 부처에 명분좋게 설치해 놓은 각종 중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이나 증권감독원 등 산하기관이나 공공성이 강한 기업에 대한 감독·규제 기능을 갖는 공공기관 등을 엄정한 중립

성과 전문적 법률판단이 주된 특징을 이루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설치법령을 뜯어보아도 상근의 법률전문가로 체우도록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같은 공공기구들은 중립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권력기관으로서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을 뿐이지 결코 봉사하고 있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니 개혁은 법률가의 역할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민주화의 문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요즘의 개혁논의가 갖는 치명적인 문제점은 능력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공상론적 법학교육론일 것이다.

우리의 법제가 억압적이라고 논란하는 논거는 집행을 가능케 하는 인적·물적 자원이 결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좋은 법과 제도의 형식만을 갖추는 것으로 손쉽게 일을 끝내 왔다는 점에 있다. 능력이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볍게 믿고 일을 꾸미는 것은 일종의 기만일 것이다.

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운영할 인적·물적 자원이 없으면서 제도를 현실화했을 경우, 제도는 형해만 남아 형식화되고 제도목표에 반하는 부캐와 부조리가 양산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는지 알 수 있다. 예컨대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절차의 기본적 원칙으로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판중심주의란 쉽게 말하면 형사피고인에 대한 증거조사 등 심리는 공판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원칙이지만, 과다한 사건량에 시달리는 법관은 하루 법정에 수십 건의 사건을 심리해야 하다보니 증인심문은 가능한 한 빨리 마쳐야 하고 피고인에 대한 반대심문은 가능한 한 간단하게 역시 빨리 마쳐야 된다. 심문은 추상화되고 ‘자질구레한’ 인권보장 절차는 무시되거나 생략되는 것이 법원의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되며 법관은 한정된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할 사건의 매듭을 쳐야 하므로 심리는 형식화되고 사건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법

관과 마찬가지로 격무에 쫓기며 작성된 검사의 수사기록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공판중심주의는 말뿐이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변호사의 선임이 갖다 주는 피고인을 위한 이익이란 고작 심리의 시간을 다소 연장하거나 주장을 정리해 주고 관대한 처분을 구걸하는 데 그친다. 이는 분명한 억압의 한 형태이며 변호사의 역할은 법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 법정에서 다하지 못한 변호를 추가하는 것이겠지만, 법원은 역시 부조리의 한 양태라 하여 수년 전부터 변호사의 법관실 출입에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또 다른 규제를 창조하고 있는 셈이다. 법관이라는 인적 자원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업무의 양이 훨씬 적다면 공판중심주의는 하나마나한 형식에 그치지는 않을 터이고, 변호사는 구태여 법관실 출입을 하지 않아도 법정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있는 변론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할 능력도 없으면서 선진형의 제도만 갖추다보니 제도는 ‘교과서의 법’으로만 남아 형식화된 셈이다.

법조인 양성제도를 논의하면서 전문법과대학 원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 논리적 정당성 여부 이전에 또 하나의 ‘능력없는 제도’를 공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싶다.

## 법률가 양성제도의 문제

언론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거론해 왔던 로스쿨은 정확히 어떤 교육제도인지 종잡을 수 없어 그 개념은 너무도 혼란스러워진 형편이긴 하지만, 학부의 법과대학 存否에 불구하고 대체로 법학을 2년 또는 3년의 대학원 과정에서 교육시키는 전문대학원 제도로 상정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미국에서 법과를 학부에 두지 않고, 학부 전공의 여하에 불구하고 법학을 3년 제의 대학원에서만 교육토록 하는 법조인 양성

제도와는 다른 것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80여 개 학과에 7,000여 명이 재학하고 있는 기존의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를 일거에 없애버리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므로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종래의 법학 학부는 존치한 채 전문법률교육을 시키는 전문대학원제를 구상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인즉, 그같은 경우도 알아듣기 쉽게 로스쿨이라 할 법도 한 것이다. 어떻든 법률가의 양성문제는 두 가지 관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법률가들의 역할에 관하여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다. 오늘의 사회변화가 단순히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단기간 내에 산업사회화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농경사회적 문화 요소가 상존하는 터에 정보사회로 급변하는 과정에서 더욱 복잡해져가는 사회관계의 틀이라고 할 법과 제도, 이를 현실화하는 법률가들의 역할 등은 역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조정되어야 할 상황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경우는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로서 독립된 지 반세기에 불과한 한편, 그동안에도 시종 권력과잉의 체제에서 국가와 시민 간의 세련된 사회계약적 틀은 파괴·손상되어 왔던 터여서 근대적 국민국가에 요구되는 자적 기반은 극도로 취약한 현실인 형편이다. 국민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은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수사적 형식으로 남아 있고 권력은 여전히 과잉이어서 정의제도 위에 군림하면서 사적 부문 상호관계의 규범조차 왜곡시켜 공정한 경쟁의 규칙에 넓고 깊은 상처를 입히고 있다. 법은 권리이나 이와 융합한 사적 부문에 대하여 눈감거나 관대한 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가혹하며 획일적인가 하면 포괄적이어서 정의는 계층적이기조차 한 형편이다. 이같은 우리에게 특유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자유주의적 제도개혁은 보다 근본적이고도 광범한 '제도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법조개혁의 논의의 범위도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제정립하는 법과 제도의 재검토는 물론 사회관계적 갈등을 해소하는 '분쟁의 조정체계'도 재검토되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억압적 요소의 법과 명령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일, 정체결정 과정에 이해가 상치되는 민간부문의 광범한 참여를 공식 제도화하는 일, 중앙과 지방 간의 권력과 가치를 적절히 제배분하여 지방화, 분권화를 실질 제도화하는 일 등 권력을 분화하는 일들로부터 정부의 법제업무를 헌법적 원칙에 엄격히 정합시키는 일, 법령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시민의 이의와 청원을 수용하는 각종 심판소와 위원회 등 준사법적 기관 등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일, 기업의 거래관계를 법령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인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 정부뿐만 아니라 사적 부문에서 사적 전문성을 높여 경쟁력을 높이고 제도의 공식성을 확보하는 일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를 품위 있는 생활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데 법의 기능은 깊이 있게 고찰되고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양성되어야 할 법률가들은 위와 같은 제도의 개혁에서 충분히 역할할 수 있는 광범한 영역을 제공받아야 하며 고상하고 품위있는 민주적 덕목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높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서 개혁은 법률가들이 활동하는 영역을 광범하게 확대하는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제도적 개혁과 맞물린다는 말이 된다. 법률가가 양산될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를 정부에 기용하면서 법무실에 소속 근무케 한다는 정도의 조건 반사적 발상으로서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양산된 법률가들로 인하여 사회부문은 엄청나게 부패할 우려만 높아질 것이다.

둘째로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에 관한 냉정한

검색을 통하여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최대치를 찾는 일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많은 공식적 제도들은 흔히 형식화되어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문민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했던 현 정부가 이른바 개혁의 표어를 내걸면서 단행했던 제도들은 조금만 살펴보면 거의 모두 구호만 요란했을 뿐 형식화되어감을 읽을 수 있다.

부정부패 척결을 가치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름만 남아 있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과정으로 일시 세상이 요란했을 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권한도 의무도 책임도 없는 기구로 전락되어 명사들의 모임으로 화했는가 하면, 각 시·군에까지 위원회를 둘으로써 260여 개가 넘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고 위원들이란 조사능력도 시간도 없는 아마추어들의 간헐적 모임으로 되고 말았다. 가히 혁명적이라고 떠들썩했던 금융실명제라는 것도 가명이나 가공인물의 예금구좌만 없었을 뿐 차명구좌는 여전히 남아 있어, 과세의 시작에서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던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착오이었는지 실감케 하고, 앞으로 종합과세를 한다지만 지하경제는 보다 정교한 방어방법을 개발하여 보통의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억압의 형태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같은 정체들이란 권력이 구호만을 선호하면서 능력없는 제도 창출을 시도했던 데 근본적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금융뿐 아니라 부동산 소유권 등을 설명화하는 입법 조치가 이루어져 일시적 대중적 인기품목으로 등장했지만, 부동산 소유권의 형식주의에 익숙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실명제는 오히려 생활 공동체의 실질적 정의를 파괴하고 보통시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억압으로만 작용하는가 하면 부동산 거래의 일부를 음성화시켜 잠재적 범법자들을 양산할 것이다.

이같은 제도적 실패들에서 우리는 자신의 능

력과 조건의 결핍들에 대한 솔직하고도 냉정한 평가가 결여되어 있음을 배워야 한다. 요즈음의 법률전문대학원제에 대한 정부의 발상도 그 같은 평가가 선행되거나 고려되고 있는지 묻고 싶어지는 것은 단순한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에서가 아니라 ‘지적 책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법조인 양성제도의 몇 가지 예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대학의 법학과에서 법이론을 이수케 하여 시험을 치른 후 시험합격자에 대하여 실무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전국에 약 70개의 대학이 있고 그 중 41개 대학에 법학과가 있어 그 졸업자는 연간 4,000여 명에 달하나 이들은 국립행정관학교(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국가사법관학교(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또는 변호사연수원(Centre Régionale de Formation Professionnelle)의 입학시험에 각각 응시하여 입학할 수 있으나 응시자의 20% 내지 30%가 입학된다.

변호사가 되려면 먼저 변호사연수원에서 1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연수보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변호사자격증명서(CAPA) 취득 시험을 치러야 하며, 합격자는 다시 변호사시보(avocat stagiaire)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하고 2년간의 실무수습을 다시 거쳐야 하며 수료증명을 발부받아야 비로소 완전한 변호사가 된다. 국립행정관학교나 국립사법관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졸업후 고급행정공무원 또는 사법관(법관 및 검사)으로 임명되는데 사법관의 경우는 31개월의 연수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연간 100명 내지 150명이 배출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역시 법과대학이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행정부처나 경제계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필요한 법률전문가 모두를 법과대학에서 양성한다는 점이며 법과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자격시험인 제1차 국가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3년 반(7학기)의 법과대학 과정을 수료하면 제1차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응시횟수 제한 때문에 실제로는 만반의 시험준비를 해야 하므로 법학과 입학후 시험합격까지 걸리는 기간은 5년 6개월 내지 6년이 소요되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법과대학 졸업자격을 부여받는다.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관시보로서 준공무원의 대우를 받으며 실무수습은 법원, 검찰청, 변호사회, 행정부처, 기업 등에서 각 직역 별로 2년간에 이루어지며 이를 마친 후 제2차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비로소 완전한 자격을 취득한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과대학을 이수해야 하며 1,2차의 국가시험을 거치는 데 약 8년이 소요되는 실정이어서 오래 전부터 EU의 타국가에 맞추어 그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영국의 경우에는 31개의 대학에 법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아울러 Polytechnics라는 직업적 전문학교에도 법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나 타국과 마찬가지로 법학은 학부과정에서 이수된다. 다만 법과대학의 과정은 3년이며 이를 마치면 법학사의 자격이 주어지고 이들은 4개의 Inns of Court에 들어가 실무수습을 마친 후 Barrister(소송변호사)가 되거나 Solicitor(사무변호사) 단체인 로 소사이어티가 경영하는 로스쿨에 들어가 실무수습을 마치고 사무변호사가 되나 그 어느 경우든 1년 또는 2년간의 수습을 마친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합격후에도 바로 개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시 1년 정도의 실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경우는 주지하다시피 우리와 같은 제

도이며 4년제 법과대학, 사법시험 및 합격자에 대한 연수 등이 거의 같은 설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로스쿨은 위 각국의 제도들과 전혀 달라 3년간의 전문대학원이며 4년제 대학이나 3년 이상의 전문실습 과정을 마친 자에게 입학자격이 부여된다. 로스쿨에서는 법학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전문적 실무교육이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입학에 경쟁이 심하여 대체로 우수한 학부 졸업자들이 몰리고 이론과 실무를 모두 3년 동안에 이수하여야 하므로 학업의 집중도가 높아 혹독한 학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여기에서는 대체로 7,8개의 필수 기본과목 외에 헌법, 세법, 회사법 등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행정법, 독점금지법, 상법, 가족법, 자작재산권, 고용, 환경, 식품, 의약, 해외투자, 국제법, 국제금융, 무역, 노동, 사회보장, 보험, 소비자보호, 주요 각국의 법제 등 수십 개 분야에 걸쳐 세분된 전문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과학, 시민법 등 법학의 기초이론 분야도 선택토록 하고 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을 치르지만, 충실히 교과를 이수하면 대부분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으로서 합격에 그리 큰 어려움은 없는 현편이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의 졸업생들은 대부분 종합법무법인(로펌)이나 기업체의 고용변호사로 취업하며 종합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에는 이소시에이트로서 도제식 실무수습에 종사하면서 7,8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파트너가 될 수 있어 로스쿨에서의 법학 교육과 로펌에서의 현장 실무수습이 연계되어 거의 10년에 걸친 훈련을 통하여 세련된 법률 실무자가 탄생된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따라서 미국의 법률가 양성은 비록 학부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로펌이라는 조직된 법률전문가 조직에 의하여 실무능력이 닦여지고, 특히 직업윤리를 내재화하는 장기간의 실

무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일반기업에 취업한 변호사들의 경우에도 단순히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영업 등 일선업무에 종사하면서 로스쿨을 졸업한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병행하는 것이어서 영업 등의 일선 전문가로 양성되고 그같은 경력을 거쳐 타회사원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간부로 성장하고 중역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법률가들이 고용되어 있지만, 그들은 오로지 법률사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 등 기업의 일반업무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기업이윤에 공헌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로펌이라는 법률가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어 기초적 이론과 실무를 갖춘 변호사들이 재훈련과 현장 실무를 익히는 세련된 도제 과정을 밟는 셈이고 이들 국가뿐만 아니라 독일의 경우에도 많은 변호사들이 기업내 변호사들로 흡수됨으로써 역시 홀륭한 사업가겸 법률가들로 성장하는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한국의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 양성

서구의 이같은 설정에 비하여 우리의 법학교육이나 실무영역 및 실무능력은 전혀 판이한 형편이다.

우리의 법학교육은 4년제 학부에서 이루어지나 1년간의 교양과목과 3년간의 전공과목교육으로 나뉘어져 있고 분교를 포함하여 84개 대학에 법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입학정원은 1995년을 기준으로 모두 7,566명이어서 법과대학의 수나 학생수는 일본(83개), 프랑스(41

개), 독일(구서독 기준 31개), 캐나다(30개), 스위스(8개), 오스트리아(5개) 등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하나 대학별 입학정원은 평균 약 90명으로 일본(443명), 미국(250명)에 비교해 보아도 매우 적은 숫자이다. 이는 곧 법과대학의 수는 지나치게 많은 반면 규모가 영세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더욱 문제되는 점은 교수인력으로서 84개 법과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법학교수는 불과 672명에 불과하여 법과대학당 평균 8명의 법학교수가 있을 뿐이다. 어느 대학의 경우는 법학교수 1명밖에 없는 실정이며 전임강사를 포함한 법학교수가 10명 미만인 대학이 전체의 약 70%인 60개 대학에 이른다. 법학교수가 가장 많다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경우에도 전임강사를 포함하여 31명에 불과한데 이는 미국 조지타운 법과대학원의 136명, 미시건 대학 법과대학원의 110명에 비추어 보거나, 우리와 학제가 같은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의 교수 99명, 독일 본 대학의 74명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적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교수의 수가 적다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대부분의 과목은 시간강사에게 맡겨짐을 의미하며 그 교육의 수준이 어떨 것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비교적 충실히 법학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서울대 법과대학의 경우에도 강의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등의 기본법과 민·형사소송법 외에 국제법, 노동법, 법철학, 법제사 등에 국한되고 그것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개괄적 이론강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우리의 사법시험제도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제1차 시험에 법률과목이 아닌 경제학개론, 문화사, 국사 등을 필수과목으로 과하고 국제법, 국제사법, 사회법, 형사정책,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법철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가 하면 제2차 시험에는 국민윤리, 현

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과하여 기본법 외에 국민윤리라는 불필요한 과목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응시생들은 기본법 외에 경제학, 문화사, 국사, 국민윤리라는 교양학부 수준의 과목을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며 그 공부란 극히 형식적인 것에 그치면서 고통만 안겨주는 결과를 빚게 된다. 선택과목도 공부하기 쉬운 쪽에 편중되기 마련이어서 비법률과목으로 편향되고 기본법을 제외한 선택과목에 속하는 법률은 모든 법과대학들에 의하여 무시되므로 대학에 따라서는 아예 청강하는 강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개설하더라도 학생이 없는 과목으로 전락하고 만다. 좀 전문적이고 특별한 분야를 공부한 교수들은 강의의 기회가 부여될 리 없으므로 사법시험 과목에 해당되는 비전공 과목을 강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우리 법과대학의 법률학 강의는 사법시험과목 위주로 집중되고 그것도 형식화되며 학생들은 강의를 듣기보다는 기본서들을 반복하여 읽는 데 온갖 정력을 쏟기 마련이므로 법과대학은 연구도 강의도 공허해진 고시학원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더구나 연구영역과 실무영역이 분리 반목하는 법률가들간의 갈등은 법과대학을 황폐화하는 데 일조해 왔으며 1981년 이른바 졸업정원제 채택과 함께 대학마다 비용에 비하여 수익성이 높고 대학의 위신을 높인다는 보이지 않는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편으로 법학전공자가 급증하고 비법률전공자들조차 다수 응시함으로써 사법시험 응시인구는 무려 2만여 명에 이르러 보이지 않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과다한 법과대학 인구와 응시인구, 과소의 교육자 인구, 영세한 대학규모, 변별능력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사협시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커리큘럼과 강의내용 등으로 집약되는 법학 교육의 제도 현실은 우리의 법학교육을 지속적

으로 퇴화시켜 오고 있다.

거의 독학이나 매한가지인 이른바 고시공부를 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예비법조인들은 합격후 2년간의 사법연수원 실무교육을 받으나 25명 내외의 현직 부장판사 또는 부장검사들로 구성된 정규 교수진들과 10여 명의 변호사 등 외래 강사들의 강의와 법원, 검찰, 변호사사무실에서의 실무수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선 실무교육에 집중되고 있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실무에 즉시 임할 수 있는 교육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무 위주여서 교육효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법관의 경우는 임관후 배석법관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도제식 훈련을 받는 셈이지만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미숙성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같은 일련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 법조인이 양성되는 과정을 보면 교육의 내용이나 실무의 수습이 오로지 기본법에 국한되며 재야 변호사로 출발하든 재조 경력을 거친 후 변호사가 되든 그 업무의 영역은 기본법에 국한되어 사회전 분야의 생활규범들과 동떨어진다는 점과 사법과정에만 참여하는 이른바 송무활동으로 모두 국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법조인들이 추구하는 법과 정의의 규범적 원칙들은 정부나 의회 등의 공적 부문, 기업이나 가계생활 등 사적 부문에 이르기까지 보다 넓은 영역에서 방치되거나 공허한 수사로만 남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국가주의적 전통이 강한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의 법제를 도입하여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사법전통에도 원인이 있으나, 독립 이후 지속되어 왔던 관료권위주의적 독재체제가 빚어놓은 제한된 법치주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의 제한적 법치주의의 제도와 관행들은 우리 자신의 자유영역에 제한과 억압을 가져다 주었으나, 세계 범위의 자유무역 체제의 등장이라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닥뜨려

엄청난 도전을 면치 못하는 처지에 이르기도 했다.

이른바 정부의 ‘세계화’ 구호에 맞물려 법학계와 정부 일각에서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우리 법학교육은 이른바 전문법과대학원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특히 재야법조인에 대한 원색적인 윤리적 비난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언론에 편승하여 강요의 국면에까지 이르렀다.

## 전문법과대학원제의 허와 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법과대학을 존치시킨 채(설사 5년제로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로스쿨과 같은 류의 2년 또는 3년제의 전문대학원제를 둔다는 제도구상은 자신의 능력과 조건을 망각한 무책임한 공상론에 불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과대학을 아예 폐지하고 학부 졸업자들이 전문법과대학원을 이수케 하는 순수한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 역시 교육능력이 전무한 현실을 간과한 공상론에 지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의 로스쿨 제도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교수능력을 갖춘 교수진과 졸업자들에게 5년 내지 10년에 이르는 도제식 실무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로펌 제도의 결합에 의하여 의도된 제도적 기능을 발휘해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기본법에 국한된 법이론과 실무를 가르칠 수 있는 제한된 교수인력(즉, 현존 법학교수와 법원, 검찰의 실무가들)을 차용해 올 수 있을 뿐 기본법을 제외한 훨씬 더 광범한 전문영역을 교수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전무한 상태이며, 송무 위주의 실무교육능력도 이를 교수할 인적 자원은 재조 경력 법관 등 일부에 국한될 뿐이다. 따라서 현행제도로 둔 채 사법시험 합격자의 수를 500~600명으로만

당장 늘려도 이들에게 법원, 검찰, 변호사 실무를 가르칠 교수요원의 원활한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형편에 있다. 사정이 이러한 터에 전문법과대학원을 둔다면 현재의 법과대학을 2, 3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실무능력은 형편없이 저하되고 지금보다 훨씬 고양되어도 부족할 법조윤리의 수준은 더욱 떨어질 뿐 아니라 전문능력은 개인적 해결에 맡겨지게 되어 품위 있는 법조인을 기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자각해야 할 것은 전문능력을 키울 교육능력이 전무하다는 냉혹한 현실사정이다. 전문법과대학원을 두려면 통상거래, 증권, 보험, 해사, 지적 재산권, 세무, 노동, 투자 등 수십 개 분야에 걸쳐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그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바, 국내의 법학계나 실무계 어디에도 그같은 인적 자원은 없다는 우리의 능력부족에 대하여 눈감을 수는 없는 것이다. 능력도 없으면서 전문법과대학원을 두었을 때, 이는 현존 대학원 법학과와 무엇이 다르겠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변호사 시험을 치러 본들 무슨 과목을 과할 것이며 출제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 조금만 분별있게 생각해 본다면 사정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사법정의의 실현에 봉사할 것을 덕목으로 하는 송무 실무영역에는 과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법조인이 단순한 기술자로 취급되는 경제적 시각에 비추어 본다면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 등 시장경제적 경쟁원리가 온당할 듯 보이지만, 정의와 공정 등 민주적 가치의 실현이 사건 하나하나를 통하여 구체화되는 계량 불가능한 규범성에 대하여 눈감을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의 윤리적 덕목은 거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는 것이다.

전문교육을 시킬 능력도 없으면서 전문법과대학원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실패한 실험으

로 끝나고 말 것이며, 개혁이 요구되는 사법정의제도는 오히려 퇴화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 것 같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요구되는 과업은 전문법과대학원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양산되는 예비법조인들의 실무능력을 높이고 법조윤리를 확고히 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과, 특히 서비스 개방에 대비하여 전문능력을 높이는 새로운 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준비를 서두르는 일이다. 수십 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 전문영역을 가르칠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법관·검사·변호사·학자들을 선발하여 미국, 일본, EU 국가 등에 특정분야를 연구하도록 파견하고 그들로 하여금 현장실무까지 이수토록 하여 수년 내에 교수요원으로 투입하고 이같은 기획이 적어도 5년여 이상 지속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수년간의 외국연수로써 교수요원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서비스 개방이 눈앞에 닥치고 이른바 정보화 사회로 가는 속도는 상상하기 어렵도록 빠른 터에 짧은 장래에 닥칠 엄청난 서비스 경쟁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적응이라도 해보기 위해서는 긴급한 비상의 대책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정부나 기업 등 민간부문은 전문능력이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현재의 손해를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래 고도의 전문능력을 갖춘 법률가 1인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투입된 비용의 수천 수만 배의 공헌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도로 훈련된 통상전문 법률가를 수십 명이라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 상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우리에게 잠재력 있는 인적 자원은 풍부하나 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잠재력이 그대로 묻혀 버린다는 생각을 해봄직하지 않은가. 오늘의 학교교육도 대학교육도 심지어 예술이나 스포츠까지도 지도자가 없어 능력이

계발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지금은 공허한 학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 훌륭한 교수요원을 양성하는 일에 착수할 때인 것이다.

## 맺음말

이제까지 이 글의 논의 수준이 그리 정교하지도 못하고 매끄러운 논리적 체계도 결하고 있으나, 논자는 법률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은 두 가지의 기본적 이념을 염두에 두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은 견지해 왔다고 생각된다. 즉, 첫째는 법치주의의 정착이며, 둘째는 개방에 대한 적응이다. 이 두 가지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나 법률가들은 우리의 법치주의에 대하여 여지껏 본질적 의문을 제기한 예도 없고, 한 마디로 무관심했으며 앞으로도 그런 것 같다. 외국의 학자들이 역암적 법제(법규법과 법현실의 괴리도 역암의 한 형태일 것임)라거나 관료주의적 법제라고 호칭하는 법주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여 법과 명령, 규칙의 제정과 그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자유와 정의를 왜곡해 온 우리의 제도와 관행은 이른바 세계화는커녕 국제환경의 변화에도 적응치 못하게 우리를 뮤어왔다는 생각이 듈다.

모처럼 법학교육제도의 개혁 논의가 제법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국가와 시민, 사법의 제도현실, 왜곡된 정의제도에 주목하려 하지 않고 민간부문의 일각에서 제한된 제도적 활동에 급급하는 재야법조계에 대한 윤리적 질타와 그에 대한 반작용의 논리, 즉 일거에 대량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책에 대한 공허한 논의를 끝없이 반복해 왔다. 이같은 논의에서 논자는 어떤 지적 장인성(intellectual craftsmanship)의 단편도 찾을 수가 없었다. 기실

말끝마다 떠올리는 전관예우니 과다보수니 하는 윤리적 논란은 그 부분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권력 현상의 단면이며 우리 언론이 깊이 맛들여 있는 또 다른 사이비 상황(pseudo situation)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필요하면 법조인의 수는 필요한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증원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의 법조인은 현재와 같은 우리의 제한된 법치주의에서는 처음부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서로의 논의는 이해의 상충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종국에는 추해지게 마련이다. 문제는 법조인의 역할을 송사에 매달려 법원이나 검찰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이나 바라는 데에 국한시킬 것인지, 아니면 국정의 전반과 기업 등 사적 부문의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유효한 인적 도구가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인지에 있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지적 책임은 우리에게 양산 위주의 전문법학교육을 실시할 인적·물적 자원, 즉 능력이 있느냐 하는 실용적 의문이다. 제도가 제도현실로 정착되려면 능력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논급을 회피하며 학제를 논의하는 것은 심하게 평하여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능력이 모자랄 바에는 능력을 키우는 일에 우선 착수하면서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훨씬 성실해 보일 것이다.

사법시험의 선별능력을 높이고 법과대학의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사법시험의 시험과목과 1·2차 전형의 방법을 면밀하게 재검토하는 등의 사법시험제도의 개혁을 논의하고, 점차 증원될 합격자들에 대하여 어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켜 고도로 세련된 법률가를 양성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 현재의 사법연수원의 연수기간을 1년 가량 더 연장하고 전문교육은 교수요원이 없는 형편을 감안하여 우선 정부 등 공적 부문과 기업 등 사적 부문에 상당기간 현장실무를 이수토록 하고 외국어 연수를 강화하는 등 실현가능한 보완책을 서두르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일 것이며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WTO가 법률분야에서도 우리의 목전에 와 있기 때문이다. ■

---

김성남/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 사법대학원과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제1회 사법시험 합격후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과 서울변호사협회 조사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알로만 선진국』과 『법조의 유형별 요인분석과 대책』 등이 있고, 논문으로 “발전도상국에 있어서의 법의 기능” 외 다수를 발표했다.